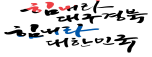
	<b>보도참고자료</b>	
<b>보도일시</b>	2020. 3. 17.(화) 12: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생산 부서: 법인납세국 법인세과	담당 과 장	양동구 과 장	044) 204-3301
배포 일자: 2020년 3월 17일	담당 자	김지연 사무관	044) 204-3327

##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과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 - 대기업 계열 및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증 실시 -

- 2019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3.31.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,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,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.
  - 또한, 일정규모 이상\*인 공익법인은 5.4.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여야 합니다.
    - \*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
  -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수익 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3.31.까지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-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신고 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.
  - ①확진환자가 발생·경유하는 등 직접 피해를 입은 공익법인은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, ②「특별재난지역」으로 선포(3.15.)된 대구·경산·청도·봉화 지역에 소재한 공익법인은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하겠습니다.
    - \* 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 포함
  - ③공익사업 운영상 피해를 입어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3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하겠습니다.

-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공익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신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  - 「공익법인 전문상담팀」이 신규·소규모 공익법인 신고 지원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, 신고에 도움이 되는 「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」와 「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」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.
    - \* 연간 기부금 수입과 수익사업 수입금액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법인
  - 특히, 올해는 세법상 의무 미이행 시 증여세가 추정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「신고도움서비스」와 기존 신고 내역 등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「미리채움서비스」를 확대 제공하여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    - \* 특수관계 임직원 급여지급 현황, 출연재산 매각대금 기준미달사용 유의사항 등
- 한편,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검증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.
  - ①대기업 계열공익법인은 전수검증을 실시하고, ②비계열 공익법인 중 자산·수입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까지 개별검증을 확대하며, ③그 외 일반공익법인은 전산분석된 탈루혐의 항목 위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- 지금까지 검증 결과,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부당채용하고, 동일 계열의 다른 공익법인과 함께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법정 한도(5%) 이상 보유하는 등 다양한 위법사태가 적발되었습니다.
- 앞으로 국세청은, 불성실 공익법인은 엄정히 검증하되, 신고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공헌에 크게 기여하는 공익법인을 발굴하여 「아름다운 납세자」로 추천하는 등,
  -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준수하면서 설립취지에 맞는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## 1 공익법인 신고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.

### 공익법인 신고 안내

-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3.31.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,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,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- 「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」, 「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」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   - \* (접근경로) 홈택스>신고납부>일반신고>공익법인보고서 제출
- 또한, 2019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(종교법인 제외)은 5.4.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하여야 합니다.
-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3.31.까지 신고·납부해야 하며,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.

### 코로나19 피해 공익법인 세정지원

-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공익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법인을 위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 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.
  - ① (직접 피해법인)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·경유하거나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에 소재한 공익법인은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.
    - \* '19.12월 사업연도 종료 공익법인의 경우
      - ▶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기한 : 6.30.까지, ▶ 결산서류 등 공시 : 7.31.까지
  - ② (특별재난지역) 대구·경산·청도·봉화 지역에 소재한 공익법인은 직권으로 신고 기한을 1개월 연장하겠습니다.
    - \* 보고서 제출기한(3월 말)까지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 포함

③ (피해기업 신청) 코로나 감염 등으로 공익사업 운영상 피해를 입어 기한 내 신고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3개월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하겠습니다.

### 신고지원 서비스 강화

- 국세청은 복지·교육·의료·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재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을 공감하고,
  -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에 맞는 공익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지원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.
- 「공익법인 전문상담팀」(132개팀)을 운영하여 신규 공익법인과 소규모 공익법인에 대한 신고지원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,
  - \* 연간 기부금 수입과 수익사업 수입금액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법인
  -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을 책자·리플릿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, 세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의무사항을 안내문 등을 통해 개별안내\* 하였습니다.
    - \*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대상 확대 등
  - 또한,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신고화면에 「공익법인 신고서 작성요령」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- 특히, 지난해부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간 영리법인에게만 제공하던 「신고 도움서비스」와 「미리채움서비스」를 공익법인에도 도입하여,
  - 출연재산 보고서 신고 전에 의무 위반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항목\* 위주로 「맞춤형 신고도움자료」를 제공하고 있으며,
    - \* 특수관계 임직원 급여지급 현황, 출연재산.매각대금 기준미달사용 현황 등
  - 공익법인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 신고자료 등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「미리채움서비스」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## 2 편법 상속증여 공익법인을 집중 검증하고 있습니다.

-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세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.

### 공익법인 분석전담팀을 통한 검증

- 공익법인의 여러 가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, 공익법인 제도를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,
  - 대기업과 그 사주 등이 출연한 계열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청 「공익법인 분석전담팀」에서 전수 검증을 실시하여 사주의 편법적인 상속·증여 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.
  - 특히, 세금면제 혜택만 받고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공익사업 유형별(예술문화·학교·장학·의료 등)로 3대 중점분야를 집중 검증하고 있습니다.

#### [3대 중점 검증분야]

중점 검증분야	항 목
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출연받은 재산 등의 사적사용</li> <li>▶ 출연재산 매각대금, 운용소득 등의 기준미달 사용</li> </ul>
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특수관계인과의 부당 내부거래</li> <li>▶ 계열사 주식 초과 보유</li> <li>▶ 이사 선임기준을 초과한 특수관계인 이사 선임, 임직원 채용 여부</li> <li>▶ 특정기업의 광고·홍보 등 행위금지</li> </ul>
성실공익법인 제도 편법 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기준(5%) 초과 보유</li> </ul>

- '19년 하반기부터는 비계열 공익법인 중 자산·수입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방청 「공익법인 분석전담팀」에서 개별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,
- 그 외 일반공익법인은 전산분석된 탈루혐의 항목 위주로 일선 세무서에서 사후관리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##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을 통한 세무조사

- 또한, 지방청에 「공익법인 조사전담팀」을 별도로 두어 검증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
  - 세무조사를 통해 세법상 의무사항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탈법행위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### 공익법인 외부감시시스템 강화

- 공익법인의 공시정보 품질과 접근성을 높여 기부자에 의한 감시시스템도 강화하였습니다.
  - 2018사업연도부터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도입되어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과 결산 공시서류의 비교 가능성이 높아졌으며,
  - 기부자들이 기부단체 현황 및 공시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「지정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」를 제공하고,
    - 행정안전부 「기부포탈」에 접속해야만 알 수 있던 기부금 모집정보를 국세청 「홈택스」에서도 공시정보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('19.3월).

## 3 공익법인의 다양한 증여세 탈루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.

- 국세청은 '17년부터 「공익법인 분석전담팀」과 「공익법인 조사전담팀」을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·조사를 강화하여 최근 3년간 1,841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.
- 지금까지 검증 결과, 고액의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면제 혜택을 받은 공익법인이
  -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부당 채용하는 등 위법 사례가 발견되었고,

- **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** 등을 위해 동일 계열의 다른 공익법인과 함께 **세법상 허용되는 보유비율(5%)을 초과하여** 주식을 **보유하는 등 다양한 탈루 사례가** 확인되었습니다.

□ **적발된 주요 탈루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**

**주요 탈루 사례(붙임참조)**

**[사례①]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**

▶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(임야 등)를 출연받고 3년이 경과한 후에도 임야 등으로 방치(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주무관청의 인정을 받지 않음)하여 출연재산에 대해 **증여세 추징**

**[사례②]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부당하게 유출**

▶ 공익법인 설립자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동 매각자금을 설립자에게 부당하게 유출하여 출연재산 매각대금 중 3년 이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**증여세 추징**

**[사례③]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**

▶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계열사의 임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특정계층에 제공한 가액에 대해 **증여세 추징**

**[사례④]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고 경비 지급**

▶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특수 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, 공익법인과 계열회사 임원을 겸직 하도록 하고, 급여 등 직·간접경비를 부당하게 지급하여 관련 경비 전액을 **가산세로 추징**

**[사례⑤] 동일 주식 보유비율(5%) 한도 초과**

▶ 계열사 주식을 2개의 공익법인이 법령상 보유 한도인 5% 미만으로 각각 분산 보유하였으나(2개 공익법인 합산 시 5% 초과), 그 중 1개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인 이사선임기준을 위반하여 **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% 초과 보유분에 대해 증여세 추징**

**4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하는 세법상 의무가 강화됩니다.**

□ 최근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법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지켜야 하는 **세법상 의무가 점차 강화**됩니다.

**①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**(’20. 1. 1.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)

- ’20사업연도부터는 **총자산가액이 100억 원 미만**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의 ①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**50억 원 이상**이거나 ②출연받은 재산가액이 **20억 원 이상**인 공익법인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.

개정 전	▶ (대상) 총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* 종교법인, 학교법인 제외
개정 후	▶ (추가)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50억 원 이상이거나 출연재산가액 2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* ’20. 1. 1.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

**② 결산서류 등 의무공시 대상 확대**(’20. 1. 1.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)

-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만 공시의무가 있었으나, 올해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**모든 공익법인(종교단체 제외)**이 **결산서류 등\***을 의무적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.

\* 재무제표,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,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, 주식보유 현황 등

- 다만,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,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**간편 양식**으로 공시 가능합니다.

개정 전	▶ (대상)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(종교단체 제외)
개정 후	▶ (대상) 모든 공익법인(종교단체 제외) * ’20. 1. 1.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

③ **의무지출제도 대상 확대**(’21. 1. 1.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)

- ’21사업연도부터는 ①총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②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도 수익(사업)용 자산가액의 1%를 공익 목적사업에 지출하여야 합니다.

개정 전	▶(대상) 동일주식 5%이상 보유한 성실공익법인
개정 후	▶(대상)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* 공공기관 및 특정 사업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종교법인 제외 ** ’21. 1. 1.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

④ **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**(’22. 1. 1.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)

- 공익법인 외부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영리법인에 대해 시행 중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\*가 공익법인에도 도입되어,  
\* (영리법인) 6년간 자유선임, 이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(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)가 지정한 감사인 선임
-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4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 한 후, 2년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.

개정 전	신 설
개정 후	▶ 일정규모 이상(’21년 시행령으로 규정) 공익법인은 4년간 자유선임, 이후 2년간은 기재부장관이 감사인 지정(국세청장에게 위임 가능) * ’22. 1. 1.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

- 공익법인의 의무이행에 관한 주요 세법개정에 대해서는 올해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개정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

5 **기부금단체 지정추천 및 사후관리가 국세청으로 일원화됩니다.**

- 올해부터 모든 지정기부금단체(종교단체 제외)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인세법상 의무이행\* 여부를 매년 주무관청(’22년부터 국세청)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

\*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, 선거운동 금지, 지출액의 80%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, 전용계좌 개설.사용, 결산서류 등 공시, 외부회계감사 등

◆ 지정기부금단체 유형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

구 분	유 형	의무이행 대상 여부	
		개정 전	개정 후
기재부장관지정 기부금단체	기재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부금단체(4,599개)	○ (2년마다 점검)	○ (매년 점검)
당연지정 기부금단체	법령에 의해 당연 지정되는 기부금단체로 사회복지법인, 학교법인, 의료법인 등	×	

-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거나,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기부금단체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’21년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 관리(지정추천 및 의무이행점검)가 국세청으로 일원화되므로 지정추천을 받으려는 단체는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(소재지 관할세무서)으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- 특히, 그동안 법령에 의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던 단체 중 ’21년에 새로이 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아야하는 단체\*는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.

\* ’18. 2. 13.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.장학.예술 단체 등, ’18. 1. 1. 이전에 舊 법인칙 별표6의7로 지정되었던 단체 중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단체, 舊 법인칙 별표6의2로 지정되었던 기부금단체(국민건강보험공단 등)

	개정 전	개정 후*
지정추천	주무관청(추천) → 기재부(지정)	국세청(추천) → 기재부(지정)
사후관리	주무관청이 의무이행 점검 → 국세청에 결과 통보	국세청이 의무이행 직접 점검

\* (지정추천) ’21.1.1.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, (사후관리) ’21.1.1.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## 6 향후 계획

-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출연재산 등을 변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을 집중 검증하여 편법 상속·증여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하겠습니다.
- 아울러, 공익법인이 신고 전에 세법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「신고도움서비스」를 확대하고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개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신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  -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익법인 규모 또는 출연재산 특성별로 의무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찾아 고도화 된 신고 도움 자료\*를 제공하고,
    - \* 현행 공시누락·오류 중심의 안내에서 출연재산 사용현황 분석결과까지 제공 (종전) 부동산을 출연받은 경우 공시내용에 포함하여야 함을 안내 (개선) 출연받은 후 3년 내 공익목적 사용현황까지 분석하여 미사용혐의 안내
  - 개정세법, 새로운 예규 등을 적용받게 될 공익법인에게 관련 내용을 개별 안내하여 세법상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세금을 부과받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또한,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공익법인이 기부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,
  - 공익사업을 활발히 운영하여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공익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「아름다운 납세자\*」로 적극 추천하는 등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.
    - \*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·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한 자 등을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 유예, 공항출입국 우대 등 혜택 제공